

『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

나. 제안이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)
-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,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 및 징수 교부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~제26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○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은,

-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,
-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, 운영관리비로 연간 20억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